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1547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1. 3.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청구원인 2. 가. (2)의 4번째 문단에서 ‘원고는 위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711263호), 원고승소판결이 2019. 10. 11.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습니다’ 부분 중 ‘원고’ 및 ‘원고승소판결’은 각 ‘D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승소판결’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안지열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 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이며,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약외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① 소외 주식회사 E 은 2013. 8. 21. 위 C 에게 금 1,140만원을 대출기간 5년, 대출이자율 연 11.02%, 연체이자율 연 21%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차입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C 은 위 차용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주) E 은 2014. 4. 18. 원고에게 위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한편, ② 위 C 은 2013. 6. 27.경 소외 주식회사 E 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즈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갑 제1호증의 2 신용카드가입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C는 위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 E는 2014. 5. 20.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각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38296호), 2015. 3. 12.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51,953,724원 및 그 중 금 10,968,132원에 대하여는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금 7,005,488원에 대하여는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① 위 C는 1994. 8. 30.경 소외 주식회사 F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즈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갑 제5호증의 1, 2 각 카드가입신청서, 신용카드원장조회 참조), ② 2013. 7. 13. 및 2013. 7. 4. 위 약관에 따라 카드론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3, 4 각 장기카드대출원장조회 참조).

그런데 위 C는 위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 E

F는 2018. 11. 14. 소의 D 주식회사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D(주)는 2019. 12. 13.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711263호), 원고승소판결이 2019. 10. 11.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C은 원고에게 금 19,304,749원 및 그 중 금 6,624,904원(1,777,778원 + 2,333,334원 + 2,513,792원)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8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2)항의 각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인 71,258,473원입니다(51,953,724원 + 19,304,749원).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아버지는 소의 G인데, 위 G은 2020. 12. 29. 사망하였고, 위 C은 위 G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G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신청서류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편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1. 3. 16.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설정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조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위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C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위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 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

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G은 2020. 12. 29.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 (피고, 수익자)와 자식들인 H, C (채무자), I, J, K, L가 있었습니다(갑 제10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1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채무자 C와 피고는 모녀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15'입니다.

나. 위 G은 2020. 12. 29.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1. 3. 12.'입니다(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1. 3.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그 중 2/15 지분은 위 C이 상속받아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3. 채무자 C의 무자력 판권하여

가. M의 2022. 5. 18.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위 C은 위 사해행위 당시(2021. 3. 12.),

① N에 금 3,925,000원(2013. 10. 21. 채무발생),

[위 회답서 중 '신용정보 조회 결과' 참조 ; 사해행위 이전에 채무·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미변제된 채무임]

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② 원고에게 금 17,973,620원 및 금 6,624,904원(이 사건 양수한 채무임, 갑 제4호증 및 갑 제8호증 각 채권제산서 중 원금잔액 참조),

등 합계 28,523,52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는 이자는 제외한 '원금' 만에 대한 것인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클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이 적극재산은 없이 금융기관에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무자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그로 인해 위 C은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82.3㎡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화조 펄스라브지붕 2층주택
지하1층 52.15㎡, 1층 및 2층 각 40.35㎡ ㎡.

